

# 예 산 총 칙

200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7,280,437	8,018,413
일반회계	228,283,284	6,848,499
특별회계	38,997,153	1,169,915
기타특별회계	38,997,153	1,169,91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40,649	82,219
낙동강수계관리기금특별회계	25,649,848	769,495
농촌주택특별회계	10,597	31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21,626	15,649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2,691,000	80,730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52,967	7,58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040,466	91,214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20,000	6,6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75,000	14,25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195,000	95,85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200,000	6,000

제 2 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해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26,463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1.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